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완화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867호, 2022.8.9. 일부 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완화(안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부동산개발 금융분야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은행’외에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추가하고,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전문인력 중 공무원은 부동산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한 일반직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조정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분야 조정(안 제9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조정 사항을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전문인력 범위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3호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란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9조 중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를 “토목, 건축, 도시·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를”을 “토목, 건축, 도시·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

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일반계약직”을 “5급 또는 5급상당(한시임기제”로, “전문계약직”을 “전문임기제”로, “공무원”을 “모든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일반직 7급 또는 7급상당(일반계약직”을 “7급 또는 7급상당(한시임기제”로, “전문계약직 다급 이상의”를 “전문임기제 다급 포함) 이상의 모든”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동산개발 금융) ① · ② (생 락) <u>③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 융 제3호에서 “「은행법」에 따 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 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자”란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 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 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u>	제4조(부동산개발 금융)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 융 제3호에서 “「상호저축은행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 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란 금융위원회가「상호저축 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 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 한다.</u>
제9조(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 준) 영 제9조제1항 별표 1의 부 동산개발 실무 제4호에서 “「건	제9조(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 준) ----- -----

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
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란 토목
· 건축· 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
술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관련기관 종사자의 인정기
 준) ①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
 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
 기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
 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
 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가.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
(일반계약직 5호 또는 전

 --- 토목, 건축, 도시·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
 ----- 토목,
건축, 도시·교통 또는 조경 분야
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에 해당하는 사람 -----
 -----.

제10조(관련기관 종사자의 인정기
 준) ① -----

 -----.

1. -----

 가. 5급 또는 5급상당(한시임
기제 ----- 전

<u>문계약직</u> 나급 포함) 이상의 <u>공무원</u>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u>일반직 7급 또는 7급상당</u> (<u>일반계약직 7호 또는 전문계약직 다급</u>)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3. (생략) ② 삭제 ③ (생략)	<u>문임기제</u> ----- - <u>모든 공무원</u>----- ----- ----- ----- ----- ----- ----- ----- 나. <u>7급 또는 7급상당(한시임기제 ----- 전문임기제 다급 포함) 이상의 모든</u> ----- ----- ----- ----- ----- ----- ----- -----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